



#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b>선 람</b>	기관의장

제48호

2021. 11. 26(금)

##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2021-2256호 공시송달공고 ----- 1
- 남원시 공고 제2021-2304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규칙 일괄정비규칙안----- 4
- 남원시 공고 제2021-2305호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문 ----- 12
- 남원시 공고 제2021-2306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19
- 남원시 공고 제2021-2310호 남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7

회 람											
--------	--	--	--	--	--	--	--	--	--	--	--

발행 : 남원시 / 편집 : 홍보전산과 ☎(063)620-6034

남원시 공고 제2021 - 2256호

##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에 따라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말소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말소처리를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11. 22. ~ 2021. 12. 7. (15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시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3. 공시송달 내용

처분의 제목	소유자 현황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성 명	주 소		위 치	건축물현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말소일 : 2021.11.19.)	강○주	남원시 주생면 정송리 138	건축물 부존재	남원시 주생면 정송리 138	주1층 세멘트블럭/스레트 주택 45.8㎡ 부1 1층 세멘트벽돌/스라브 창고 3.1㎡ 부2 1층 세멘트블럭/스레트 창고 16㎡

####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남원시청 건축과 (☎063-620-659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1. 22.

남 원 시 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남원시 공고 제2021-2304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규칙 일괄정비규칙안』을 제정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 남 원 시 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규칙  
일괄정비규칙안****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1.1.13시행)에 따라 단순인용 조항이 변경된 남원시 5개 규칙을 일괄 정비하여 안정적 법규 추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안 제1조 ~ 제5조)

**3. 입법예고기간** : 2021. 11. 26. ~ 2021. 12. 16. (20일간)**4.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1년 12월 16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감사실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wldus3787@korea.kr), fax(063-620-6781)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감사실 법무규제개혁팀(☎063-620-60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규칙 일괄정비규칙안 1부.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규칙 일괄정비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1. 12.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감 사 실 장

##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1.1.13시행)에 따라 단순인용 조항이 변경된 규정을 일괄 정비하여 안정적 법규 추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안 제1조 ~ 제5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간: 2021. 11. . ~ 2021. 12. . ( 일간)

- 결과: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남원시 규칙 제 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규칙 일괄정비규칙안

제1조(「남원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의 개정) 남원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6조”를 “「지방자치법」 제119조”로 한다.

제3조 중 “「지방자치법」 제106조”를 “「지방자치법」 제119조”로 한다.

제2조(「남원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의 개정) 남원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제111조”를 “「지방자치법」 제124조”로 한다.

제3조(「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지방자치법」 제117조”를 “「지방자치법」 제131조”로 한다.

제4조(「남원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의 개정) 남원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23조”를 “「지방자치법」 제129조”로 한다.

제5조(「남원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남원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방자치법」 제140조”를 “「지방자치법」 제157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1.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1. 남원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권한대행 및 법정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권한을 대행한다.</p>	<p>제2조(권한대행 및 법정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 ----- ----- ----- ----- ----- -----.</p>

### 3.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읍·면·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읍·면·동에 두는 읍·면장 및 동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p>	<p>제16조(읍·면·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 ----- -----.</p>

### 4. 남원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3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lt;개정2008.10.10, 2012.7.20, 2020.6.12.&gt;</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29조 ----- ----- ----- ----- ----- ----- ----- ----- ----- ----- -----.</p>

5. 남원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구제수단의 고지)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 납입고지서에는 점용료 산정근거와 「지방자치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조항을 고지하여야 한다.</p>	<p>제6조(구제수단의 고지) ----- ----- ----- ----- 「지방자치법」 제157조----- ----- -----.</p>

##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규칙 일괄정비 규칙안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li> <li>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li> <li>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ol>
-----	---

남원시 공고 제2021 - 2305호

##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문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남 원 시 장 

###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유해야생동물 포획·관리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참고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급 시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허위신고자에 대한 제재 조항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 시 확인절차 강화(제9조제2항)
- 나.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위 신고자에 대한 제재 강화(제9조제4항)

### 3. 입법예고기간 : 2021. 11. 26. ~ 2021. 12. 16.(20일간)

####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1) 우편번호 : 55738
- (2) 주 소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환경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063-620-6244), 남원시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 직접 방문 등

####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환경과(☎ 063-620-62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6.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2021년    월    일</p> <p>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p> <p><b>남원시장 귀하</b></p>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21. 10.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환 경 과 장

의안 번호	
----------	--

##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유해야생동물 포획·관리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참고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급 시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허위신고자에 대한 제재 조항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 시 확인절차 강화(제9조제2항)
- 나.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위 신고자에 대한 제재 강화(제9조제4항)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10. . ~ 2021. 11. .(20일간)
    - 결 과 :
  -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시조례 제 호

##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보상금 지급)”을 “(보상금 지급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신고자는 포획 보상금 신청할 때,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PS) 및 포획위치가 표시된 사진과 포획일련번호가 표시된 포획개체(사체원형) 사진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포획보상금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 자는 피해방지단에서 제명조치하고, 제명한 날부터 3년간 피해방지단 모집대상에서 제외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보상금 지급) ① (생략)</p> <p>&lt;신설&gt;</p> <p>② 신고자가 거짓 또는 부정 방법 등으로 포획 보상금을 받 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환수한다.</p> <p>&lt;신설&gt;</p>	<p>제9조(보상금 지급절차 등) ① (현 행과 같음)</p> <p>② 신고자는 포획 보상금 신청 할 때,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 및 포획위치가 표시된 사진과 포획일련번호가 표시된 포획개체(사체원형) 사진을 함 께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신고자가 거짓 또는 부정 방법 등으로 포획 보상금을 받 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환수한다.</p> <p>④ 포획보상금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 자는 피해방지단 에서 제명조치하고, 제명한 날 부터 3년간 피해방지단 모집대 상에서 제외한다.</p>

##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

## 남원시 공고 제2021-2306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을 제정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 남 원 시 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1.1.13시행)에 따라 단순인용 조항이 변경된 남원시 25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안정적 법규 추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안 제1조 ~ 제25조)

**3. 입법예고기간** : 2021. 11. 26. ~ 2021. 12. 16. (20일간)**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1년 12월 16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감사실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wldus3787@korea.kr), fax(063-620-6781)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감사실 법무규제개혁팀(☎063-620-60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1부.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1. 12.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감 사 실 장

##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1.1.13시행)에 따라 단순인용 조항이 변경된 남원시 25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안정적 법규 추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안 제1조 ~ 제25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간: 2021. 11. . ~ 2021. 12. . ( 일간)

- 결과: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제1조(「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6조의3호”를 “「지방자치법」 제78조”로 한다.

제3조 중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지방자치법」 제19조”로 한다.

제4조 중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78조”로 한다.

제2조(「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의 개정) 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를 “「지방자치법」 142조”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법 제4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11조 중 “법 제42조제1항”을 “법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남원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으

로 한다.

제7조 중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으로 한다.

**제4조(「남원시 120만원봉사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원시 120만원봉사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8조”를 “「지방자치법」 제12조”로 한다.

**제5조(「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6조(「남원시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 남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리의 구역 변경과 폐지 분합”을 “행정동·리의 구역 변경과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으로 한다.

**제7조(「남원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조”를 “「지방자치법」 제9조”로 한다.

**제8조(「남원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의 개정)** 남원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9조(「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의 개정)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7조”로 한다.

제10조(「남원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7조”로 한다.

제11조(「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를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로 한다.

제7조 중 “「지방자치법」 제113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로 한다.

제13조 중 “법 제114조”를 “법 제127조”로 한다.

제16조 중 “제4조제3항·제5항”을 “제5조제4항·제7항”으로 한다.

제12조(「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의 개정)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제13조(「남원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90조”를 “「지방자치법」 제102조”로 한다.

제14조(「남원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남원시 교육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남원시 자치사랑방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원시 자치사랑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8조”를 “「지방자치법」 제12조”로 한다.

**제16조(「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의 개정)**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로 한다.

**제17조(「남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2조”를 “「지방자치법」 제16조”로 한다.

**제18조(「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9조(「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중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으로 한다.

제20조(「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22조(「남원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지방자치법」 제124조”를 “「지방자치법」 제139조”로 한다.

제80조 중 “「지방자치법」 제126조”를 “「지방자치법」 제141조”로 한다.

제23조(「남원시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등 징수 조례」의 개정) 남원시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6조 , 제139조 및 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및 제161조”로 한다.

제15조 중 “「지방자치법」 제140조”를 “「지방자치법」 제157조”로 한다.

제24조(「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개정)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같은 법 제13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같은 법 제156조제1항”으로 한다.

제25조(「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를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1.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8조----- -----.</p>
<p>제3조(작성대상) ① (생략) ② (생략)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생략)</p>	<p>제3조(작성대상) ①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③ 「지방자치법」 제19조에----- ----- -----. ④ (현행과 동일)</p>
<p>제4조(작성방법) ①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별지 제1호서식)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략)</p>	<p>제4조(작성방법) ① 「지방자치법」 제78조----- ----- ----- -----. 1. ~ 6. (현행과 동일)</p>

2. 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남원시의회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 ----- ----- ----- ----- -----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예산”이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7조에 따라 편성하여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li> <li>3.~ 6. (생략)</li> </ol>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 -----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 ----- ----- ----- ----- -----</li> <li>3.~ 6. (생략)</li> </ol>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적용범위) ① 시의 처리사무 중 <u>법 제39조제1항제8호</u>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이하 “의무 부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p>	<p>3조(적용범위) ① -----                      ----- <u>법 제47조제1항제8호</u> -----                      -----                      -----                      -----                      -----                      -----                      -----                      -----                      -----</p>
<p>제11조(사후관리)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u>법 제42조제1항</u>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1조(사후관리) -----                      -----                      -----                      ----- <u>제51조제1항</u> -----                      -----</p>

### 3. 남원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6. 남원시 주민투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lt;개정 2012.11.1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생략)</li> <li>3.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리의 구역 변경과 폐지 분합</li> <li>4. (생략)</li> <li>5. (생략)</li> <li>6. (생략)</li> <li>7. (생략)</li> </ol>	<p>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lt;개정 2012.11.1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동일)</li> <li>2. (현행과 동일)</li> <li>3. 행정동리의 구역 변경과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li> <li>4. (현행과 동일)</li> <li>5. (현행과 동일)</li> <li>6. (현행과 동일)</li> <li>7. (현행과 동일)</li> </ol>

7. 남원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남원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9조----- ----- ----- -----.</p>

8. 남원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남원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t;개정 2012.11.16&gt;</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조4항----- ----- ----- ----- ----- ----- ----- ----- ----- ----- ----- ----- -----.</p>

9.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읍·면·동·리의 명칭과 구역, 하부조직, 이·통장의 정수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t;개정 2009.5.27., 2015.3.31.&gt;</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조 ----- ----- ----- ----- ----- ----- -----.</p>

10. 남원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라 남원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4.2,2017.7.14>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조----- ----- ----- -----.

11.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14. 남원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교육환경개선과 교육발전을 위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현안과 제 및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처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남원시 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 ----- ----- -----.</p>

15. 남원시 자치사랑방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자치사랑방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lt;개정2002.7.10, 2006.3.2, 2007.12.28, 2012.11.16&gt;</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 ----- ----- ----- ----- ----- ----- ----- -----.</p>

16.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분석평가의 시기) 1. (생략) 2. (생략) 3.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남원시의회 제출 전</p>	<p>제4조(분석평가의 시기) 1. (현행과 동일) 2. (현행과 동일) 3. ----- ----- :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 -----</p>

17. 남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른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동일) 1. ----- 「지방자치법」 제16조----- ----- -----

18.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생략) 1.~3. (생략) 4. “기금”이란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자금을 말한다. 5.~ 8. (생략)	제2조(용어의 정의) (생략) 1.~3. (생략) 4. ----- ----- 「지방자치법」 제159조 ----- ----- ----- 5.~ 8. (생략)

19.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20. 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lt;개정2004.12.2, 2007.7.10, 2009.11.24, 2012.11.16, 2016.5.13&gt;</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 ----- ----- ----- ----- ----- ----- ----- ----- -----</p>

21. 남

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조에 따라 남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9조 ----- ----- ----- ----- ----- ----- ----- ----- ----- ----- -----</p>

22.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기간 및 이자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관한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이자율은 발행 당시 위탁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로 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기간 및 이자율) ----- ----- ----- ----- ----- ----- ----- ----- ----- ----- 「지 방자치법」 제139조----- ----- -----.</p>
<p>제80조(설치)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 보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lt;개정 2014.6.27.&gt;</p>	<p>제80조(설치) ----- ----- ----- 「지방자치법」 제141조----- ----- ----- -----.</p>

23. 남원시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등 징수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 및 제144조와 「지방재정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광고물의 표시를 위한 공공시설물의 제공과 이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및 제161조----- ----- ----- ----- ----- ----- ----- ----- ----- -----.</p>
<p>제15조(보칙) ① (생략) ② (생략) ③ 사용료의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0조를 적용한다.</p>	<p>제15조(보칙) ① (생략) ② (생략) ③ ----- ----- 「지방자치법」 제157조-----.</p>

24.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같은 법 제139조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남원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부담구분, 그 밖에 수도물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같은 법 제156조제1항, 「----- ----- ----- ----- ----- ----- -----</p>

25.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개선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 ----- ----- ----- ----- ----- ----- -----</p>

##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원시 공고 제2021 - 2310호

『남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남 원 시 장

## 남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시행 2022. 1. 13.)으로 주민감사 청구 기준 연령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변경 (안 제1조)

나. 주민감사 청구 기준 연령 변경 (안 제2조)

- 기준연령 : 19세 이상 → 18세 이상

### 3. 입법예고기간 : 2021. 11. 26. ~ 12. 16.(20일간)

###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2월 16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감사실 감사담당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이메일([chjs1218@korea.kr](mailto:chjs1218@korea.kr)), 전화(063-620-6022),  
FAX(063-620-6781)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감사실(063-620-60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남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관한 의견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11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li> <li>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li> <li>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ol>
-----	---

# 남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1. 12.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감 사 실 장

##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이 개정(시행 2022. 1. 13.) 됨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사항을 이에 맞게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변경 (안 제1조)
- 나. 주민감사 청구 기준 연령 변경 (안 제2조)
  - 기준연령 : 19세 이상 → 18세 이상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11. . ~ 2021. 12. .(20일간)
    - 결 과 :
  -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남원시조례 제 호

남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6조 규정에 의한 시민감사청구”를 “제21조에 따른 주민감사 청구”로 한다.

제2조 중 “사무가”를 “사무의 처리가”로, “해한다고”를 “해친다고”로, “되어있는 19세 이상의 시민 100인”을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시민 100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시민감사청구에 필요한 청구인의 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제21조에 따른 주민감사청구</u> ----- -----.
제2조(감사청구) 남원시와 남원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u>사무가</u>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u>해한다고</u> 인정되는 경우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u>되어있는</u> 19세 이상의 시민 100인 이상의 연서로 전라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조(감사청구) ----- ----- <u>사무의 처리가</u> ----- ----- <u>해친다고</u> ----- ----- <u>되어 있는</u> 18세 이상의 시민 100 <u>명</u> ----- ----- -----.

**남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관한 의견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11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li> <li>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li> <li>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ol>
-----	---